
- 2024 달라지는 주요 제도 -

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.



군 산 시

목 차

1. 세제·부동산 1

- 1 납부불성실가산세·가산금·증가산금을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 /
- 2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/
- 3 출산·양육 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 신설 /

2. 농·축·수산·식품 1

- 1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 사업 /
- 2 청년창업농 영농 기반 임차지원 사업 /
- 3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 /
- 4 청년농업인 생생 동아리 지원 /
- 5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/
- 6 전략 작물직불사업 /
- 7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 및 게시 의무 /
- 8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/

3. 교육·문화·체육·관광 3

- 1 청소년 자기계발연수 자기신청장학금 /
- 2 예체능교육 지원사업 /
- 3 예술 체육 기능상업 분야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/
- 4 성정 향상 봉사장학금 /
- 5 공공 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운영 /
- 6 마중물·희망 스터디사업 대상자 확대 및 지원금액 증액 /
- 7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 /
- 8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/

4. 복지·여성·보건 4

- 1 생계급여 /
- 2 긴급복지 /
- 3 사회복지무요원 봉급 인상 /
- 4 보훈 수당 /

5 기초연금 /

6 장애인 연금 /

7 여성장애인 및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 비용 지원 /

8 가사·간병 방문 지원사업 /

9 일상 돌봄 서비스사업 /

10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:1 지원사업 /

11 식품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 개정 /

12 선별진료소 운영 및 무료 PCR 검사 /

13 돌봄 시설 종사자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비용 지원 /

14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/

15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 /

16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/

17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/

18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/

19 미숙아·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/

20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삼태아 이상 지원 확대 /

21 치매 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사업

22 한의 치매 예방 관리사업

23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사업

5. 환경·녹지 8

1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일반 가구 지원 대상 제외 /

2 특정 용도 경유차 신규 등록 제한 /

3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지역 확대 /

4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/

2024년부터

이렇게 달라집니다.

2024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

1. 세제·부동산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계 부서
1. 납부불성실가산세·가산금·증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	○ 납부 불성실 가산세 (1일 0.025%) ○ 가산금 (1회 3%) ○ 증가산금(매월 0.75%) (30만원 이상 체납한 해당)	○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- 납부·부과고지 전(1일 0.022%) -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(1회 3%) -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 후 연체 시(매월 0.66%) (45만원 이상 체납만 해당) ※ 지방세기본법 제55조, 지방세기본법 제56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4조	세무과 (454-2400)
2.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지방세법 제103조의23	○ 신설	○ 납부할 세액 1백만원 초과시, 1개월 이내 분납 가능 (중소기업은 2개월) - 기업 활력 제고 및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 신설 ※ 지방세법 제103조의23	세무과 (454-4100)
3. 출산·양육 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 신설	○ 신설	○ 감면대상 - '24.1.1.~'25.12.31. 자녀를 출산한 부모 ○ 감면요건(모두 충족 해야함) -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,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('24.1.1.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함) -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- 주택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○ 감면율 : 취득세 100%(500만원 한도) ※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	세무과 (454-2430)

2. 농·축·수산·식품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계 부서
1.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	○ 지원자격 및 요건 - 독립 영농 경력 :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○ 신청 방법 : -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	○ 지원자격 및 요건 - 독립 영농경력 :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○ 신청방법 - <u>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 온라인신청</u>	농정과 (454-2836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계 부서
2. 청년창업농 영농 기반 임차지원 사업	○ 연령기준 : -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~ 만 45세 미만	○ 연령기준 - 삭제	농정과 (454-2836)
3. 청년창업농 정책 자금 이차보전 사업	○ 지원내용 : - '18~22년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된 이후에 실행한 정책자금(융자)의 거치 기간에 해당되는 '23 년도분 고정금리 이자 1.5% 중 1% 지원 (최대 3백만원/연)	○ 지원내용(지원금액 감소) - '19년 이후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된 이후에 실행한 정책자금(융자)의 거치기간에 해당 되는 '24년도분 이자 중 0.5% 지원 (최대 2.5백만원/연) * 변동금리, 고정금리 포함	농정과 (454-2836)
4. 청년농업인 생생 동아리 지원	○ 지원단가 - 2백만원/동아리	○ 지원단가(감소) - 1.5백만원/동아리	농정과 (454-2836)
5. 기본형공익직불사업	○ 지원단가 - 소농 120만원	○ 지원단가 - 소농 130만원	농정과 (454-2844)
6. 전략작물직불사업	○ 지원작물 및 단가(하계) - 가루쌀 논콩 : 100만원/ha - 하계 조사료 : 40만원/ha	○ 지원작물 및 단가(하계) - 옥수수 : 100만원/ha(신설) - 가루쌀, 두류 : 200만원/ha(작물확대) - 하계 조사료 : 430만원	농정과 (454-2844)
7.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 및 게시 의무	○ 의무대상 - 수의사 2인 이상 동물 병원	○ 의무대상(확대) - 수의사 1인 이상 동물병원	동물정책과 (454-2872)
8.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	○ 지원한도 :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, 초과금액은 자부담 - 1회 공급금액 : 30,000원 이상	○ 지원한도 :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, 초과금액은 자부담 - 1회 공급금액 : 50,000원 이상	먹거리 정책과 (454-5973)

3. 교육·문화·체육·관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계 부서
1. 청소년자기개발연수 자기신청장학금	○ 지원내용: 자기신청장학금 - 탐구 경비지원금10만원 (현금 또는 군산사랑 상품권 모바일)	○ 자기신청장학금 - 탐구경비지원금 15만원 (현금 또는 군산사랑상품권 모바일)	교육지원과 (454-2583)
2. 예체능교육 지원 사업	○ 대 상: 지역아동센터 ○ 지원내용: 음악미술 교육	○ 대 상: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○ 지원내용: 음악·미술·체육 교육 지원	교육지원과 (454-2583)
3. 예술체육기능사업 분야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	○ 대 상: 관내 중·고등학생 - 일반장학금: 각분야 전국 대회 상위 3위 이내 입상자	○ 지원내용: 일반장학금 기능분야 장려상 부문 확대 - 민간 기능 경대회 지원사업에 선정된 민간기능 경대회	교육지원과 (454-2586)
4. 성적향상봉사장학금	○ 대 상: 관내 고등학교 2학년 200명	○ 대 상 : 관내 중3학생 100명, 고2학생 200명 ○ 사 업 내 용 : 전학기 대비 성적향상률과 봉사 점수 합이 높은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	교육지원과 (454-2584)
5.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운영	○ 온라인튜터 기간: 3개월씩 (1,2,3기) 학습지원	○ 온라인튜터 기간 : 5개월씩(1,2기) 운영 ○ 청소년 '인생등대'(온라인 비교과 컨설팅) 콘텐츠 추가 <신설>	교육지원과 (454-2582)
6. 마중물·희망스터디 사업 대상자 확대 및 지원금액 증액	○ 마중물 스터디 대상 : 초 6학년~중고등학생 지원 ○ 희망스터디사업 지원금액 : 매월 1인 최대 13만원까지	○ 마중물 스터디 대상 : 초등학생 5학년 ~ 중·고등학생 대상자 확대 ○ 희망스터디사업 지원금액 : 매월 1인 최대 15만원까지 지원금 증액	교육지원과 (454-2585)
7.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	○ 대 상 - 공고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전국 대학생 재(휴)학생	○ 대 상 - 공고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전국 대학 및 대학원 재(휴)학생	교육지원과 (454-2587)

8. 국가유산기본법 제정	<신 설>	○ 목적 -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, 국가유산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○ 정의 - “국가유산”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·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·예술적·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·자연유산·무형유산을 말한다. - “문화유산”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, 거래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. - “자연유산”이란 동물·식물·지형·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. - “무형유산”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, 공동체·집단과 역사·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.	문화예술과 (454-3267)
------------------	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

4. 복지·여성·보건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계 부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생계급여	○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% (4인 기준 162만원이하) ○ 근로사업 소득 공제 : 24세 이하 ○ 생계용 자동차 배기량 기준 1600cc미만	○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% (4인 기준 183만원 이하, 증 21만원) ○ 근로사업 소득 공제 : 29세 이하 ○ 생계용 자동차 배기량 기준 2000cc미만	복지정책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긴급복지	○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 (1인가구 : 155만원 / 4인가구 : 405만원)	○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 (1인가구 : 167만원 / 4인가구 : 429만원)	복지정책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 분</th><th colspan="4">가구원별 지원단가(단위:천원)</th></tr><tr><th>1인</th><th>2인</th><th>3인</th><th>4인</th></tr><tr><td>생계지원</td><td>623</td><td>1,036</td><td>1,330</td><td>1,620</td></tr><tr><td>기타지원</td><td colspan="4">동절기(10~3월)연료비 : 1회 110,000원</td></tr></table>	구 분		가구원별 지원단가(단위:천원)				1인	2인	3인	4인	생계지원	623	1,036	1,330	1,620	기타지원	동절기(10~3월)연료비 : 1회 110,000원				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 분</th><th colspan="4">가구원별 지원단가(단위:천원)</th></tr><tr><th>1인</th><th>2인</th><th>3인</th><th>4인</th></tr><tr><td>생계지원</td><td>713</td><td>1,178</td><td>1,508</td><td>1,833</td></tr><tr><td>기타지원</td><td colspan="4">동절기(10~3월)연료비 : 1회 150,000원</td></tr></table>	구 분	가구원별 지원단가(단위:천원)				1인	2인	3인	4인	생계지원	713	1,178	1,508	1,833	기타지원	동절기(10~3월)연료비 : 1회 150,000원			
	구 분			가구원별 지원단가(단위:천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1인		2인	3인	4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생계지원	623	1,036	1,330	1,62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지원	동절기(10~3월)연료비 : 1회 11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가구원별 지원단가(단위:천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인	2인	3인	4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생계지원	713	1,178	1,508	1,83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지원	동절기(10~3월)연료비 : 1회 15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3. 사회복지 요원봉급인상	○ 2023년 사회복지무요원 봉급 - 이등병: 600,000원 - 일등병: 680,000원 - 상등병: 800,000원 - 병 장: 1,000,000원	○ 2024년 사회복지무요원 봉급 - 이등병: 640,000원 - 일등병: 800,000원 - 상등병: 1,000,000원 - 병 장: 1,250,000원	복지정책과
4. 보훈수당	○ 2023년 보훈수당 - 지원금액: 100,000원 - 대상자: 참전유공자 등 9개	○ 2024년 보훈수당 - 지원금액: 100,000원 ~ 120,000원 - 변경내용: 참전유공자 2만원 인상 ※ 참전유공자 외 변동 없음	복지정책과
5. 기초연금	○ 선정기준액 - 단독가구 202만원 - 부부가구 323.2만원 ○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(자동차) - 차량가액 4,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,000cc 이상 ○ 기초연금액 - 단독, 부부1인 : 최대 323,180원 - 부부2인 : 1인당 최대 258,540원	○ 선정기준액 증액 - 단독가구 213만원 - 부부가구 340.8만원 ○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(자동차) 변경 - 차량가액 4,000만원 이상 (배기량 기준 삭제) ○ 기초연금액(예정) 증액 - 단독, 부부1인 : 최대 334,810원 - 부부2인 : 1인당 최대 267,840원	경로 장애인과 (454-3184)
6 장애인연금	○ 선정기준액 - 단독가구 : 월 1,220천원 - 부부가구 : 월 1,952천원 이하 ○ 지급액 : 월 40,000원~403,180원 (소득, 연령 등에 따른 차등지급)	○ 선정기준액 - 단독가구 : 월 1,300천원 - 부부가구 : 월 2,080천원 이하 ○ 지급액 : 월 50,000원~423,850원 (소득, 연령 등에 따른 차등지급)	경로 장애인과 (454-3173)
7. 여성장애인 및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 비용지원	○ 지급액 : 신생아 1명당 100만원	○ 지급액 : 신생아 1명당 120만원	경로 장애인과 (454-3173)
8.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	○ <신설>	○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사간병서비스 신청* 가능 * 신청만 가능, 그 외 처리는 기존대로 주민등록지 보장기관에서 수행	경로 장애인과 (454-3122)
9. 일상돌봄 서비스사업	○ 이용대상 - 가족돌봄청년(만13-39세) - 돌봄필요 중장년(만40-64세) ○ 지원기간 : 6개월(재판정3회) 총2년 ○ 제공기관 선정 방식 : 지정제	○ 이용대상 - 가족돌봄청년(만13-39세), - 돌봄필요 청·중장년(만19-64세) ○ 지원기간 : 6개월(재판정5회) 총3년 ○ 제공기관 선정 방식 : 등록제와 지정제 중 결정	경로 장애인과 (454-3123)

10. 최종증 발달 장애인 주간 그룹형 1:1 지원 사업	○ <신설>	○ (운영방안) - 1:1 전담 제공인력을 배치하여 집중적·개별적 지원 ○ (선정기준) - 이용자 선정조사표의 도전적 행동점수가 1점 이상 - 도전적 행동 점수가 0점이더라도 중복장애가 있거나 혼자서 신변처리 곤란한 대상자 - 그 외 집중지원서비스 필요한 대상자 ○ (지원단가) - 기본단가(16,150원)의 150% 가산(24,220원)	경로 장애인과 (454-3124)
11. 식품위생 분야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	○ 건강진단 항목 개선 (기준) 폐결핵, 장티푸스, 전염성피부질환 ○ 건강진단유예 기간 신설 (기준)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검사	○ 건강진단 항목 개선 (개정) 폐결핵, 장티푸스, <u>파라티푸스</u> ○ 건강진단유예 기간 신설 (개정)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(신설)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한 연장	보건 행정과 (454-4918)
12. 선별진료소 운영 및 무료 PCR 검사	○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○ 선별진료소 무료 PCR 검사 -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 - 60세 이상 -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(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 종사자, 입원 예정 환자 및 상주 보호자, - 의사 소견상 검사 필요한 자 ○ 지정병상 및 일반병상 중심 운영	○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○ 일반의료기관 무료 PCR 검사(한시 급여 적용) -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* 대상군 - 입원 예정 환자 및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(간병인) *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가정간호사면역자 ** 응급실·중환자실, 고위험 입원환자,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, 노인의료복지시설, 장애인 거주시설,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○ 지정 격리병상 해제	감염병 관리과 (454-5032)
13. 돌봄 시설 종사자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비용 지원	○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이동복지시설의 돌봄시설 종사자 중 임시 일용직 근로자	○ 사업 종료	감염병 관리과 (454-5015)
14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	<신 설>	○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-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,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(단, 예방접종일 기준 군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) -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	감염병 관리과 (454-5056)

15.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	○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난임부부 지원	○ 전복형 난임시술비 지원(소득기준폐지) - 기준중위소득 180% 초과 난임부부도 지원	건강 관리과 (454-5854)
16.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	<신 설>	○ 난임진단검사비 지원 - 부부합산 최대 30만원, 부부당 1회 지원 - 호르몬 검사, 자궁 내시경 등 난임 진단과 관련한 검사	건강 관리과 (454-5854)
17.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	○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의 영아 ○ 다자녀 (2명 이상)가구는 소득수준 무관	○ 소득기준 폐지	건강 관리과 (454-5854)
18.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	○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	○ 소득기준 폐지	건강 관리과 (454-5852)
19. 마숙아선천성 이상아의료비 지원	○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 ○ 다자녀 (2명이상)가구는 소득수준 무관	○ 소득기준 폐지	건강 관리과 (454-5852)
20.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삼태아 이상 지원 확대	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- 쌍태아 돌봄시간 7시간 - 삼태아 이상 돌봄제공인력2명 - 삼태아 이상지원기간 15/20/25일	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- 쌍태아 돌봄시간 8시간으로 확대 - 삼태아 이상 태아수에 맞춰 제공인력 증원 - 삼태아 이상 지원 기간 15/25/40일로 확대	건강 관리과 (454-5858)
21. 치매치료 관리비 확대 지원사업	○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- 소득기준 : 기준중위 소득 120% 이하자	○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(소득기준 폐지)	건강 관리과 (454-5865)
22. 한의치매 예방관리사업	<신 설>	○ 경도인지장애자 또는 인지저하자 대상 한의치료 서비스 지원(1인 최대 70만원 지원)	건강 관리과 (454-5862)
23.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사업	○ 주유소, 가스 충전소, 수소연료공급시설 금연구역 미 지정	○ 「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환경조성 조례」 일부 개정 (‘23.12..8.) - 관내 주유소, 가스충전소, 수소연료공급시설 금연구역 신규 지정	건강 관리과 (454-5835)

5. 환경·녹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계 부서
1.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일반 가구 지원 대상 제외	○ 지원대상 : 일반가구, 저소득층	○ 저소득층·취약계층 지원대상 변경 ※ 일반가구 지원은 불가하나 저소득층 지원대상을 기본중위소득 70% 이하인 다자녀 가구, 노유자 시설등 대상 확대 - 지침(가정용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사업 업무 처리지침)개정 예정	환경 정책과 (454-3393)
2. 특정 용도경유차 신규 등록 제한	○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[2021. 4. 1.]	○ 2024년 1월 1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, “배”번호판의 택배화물차 용도의 경유자동차 신규 등록 제한 - 법적근거 :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(약칭:대기관리권역법) 제28조	환경 정책과 (454-4463)
3.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지역 확대	○ 대상 지역 : 수도권, 부산, 대구	○ 대상 지역 확대 : 광주, 대전, 울산, 세종('23.12~) -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확대	환경 정책과 (454-4462)
4.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	○ 동물원 등록제 - 등록관청 : 전라북도 - 의무사항 사육사 1명이상 축탁수의사 허용 동물원운영 자체수립	○ 동물원 허가제 - 허가관청 사설동물원 : 관할구역 시.도 공영동물원 : 환경부(전문검사관 조사위임) - 의무사항 70종미만시 사육사 2명, 수의사 1명(비상근 가능) 허가시「동물원운영계획」의 법적 적절성 평가 ※ 공영동물원 ⇨ 요건구비토록 2027년까지 유예	환경 정책과 (454-5681)



[**www.gunsan.go.kr**](http://www.gunsan.go.kr)